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19년 시행(의제매입세액공제는 '18.10)

-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5%p 확대하여 연매출액의 40~65%까지 공제('19년 한시)
 - * (개인사업자) 연매출액 2억원 이하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50%, (법인사업자) : 40%

- ▶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년까지) 및 우대공제율(1.3%) 기간 연장('20년까지)

-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 간이고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 조정(2,400~3,000만원 미만)

- ▶ **성실사업자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 * 성실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기장의무 준수, 사업용계좌 신고 및 2/3 이상 사용, 2년 이상 계속 사업중인 사업자 등

-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납부 세액공제 (15%, '21년까지)**
 - * 의료비: 본인(한도없음), 부양가족(700만원)
 - 교육비: 본인(한도없음), 부양가족(영유아~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근로장려금 확대 '19년 시행

- ▶ **근로장려금(ETC) 요건 완화를 통한 지원 확대**
 - * 연령요건 : 30세 이상 → 폐지
 - 재산기준 : 1.4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소득요건(만원) : (단독)1,300~2,000, (홀벌이)2,100~3,000, (맞벌이)2,500~3,600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센터
044-215-211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우리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당면한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강구해
금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한 대책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더 만들고 보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는 신념을
한걸음씩 정책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책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보전 '19년 시행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액이 일정액 ('18년은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시 월 13만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예, 월 15만원)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60세 이상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회보험 가입지원 확대 '19년 시행

-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우대 지원**
 -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 지원
 - *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 190만원 미만)
 - * 사업장 규모별 최대지원율 : (1~4인) 90%, (5~10인) 80%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 건강보험료 경감**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대상 중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최대 50% 경감
 - * '18년 가입자: 30%, '19년 신규가입자: 50%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인 기준보수 등급(1~2등급 → 1~4등급)
 -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3년간 지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카드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19년 시행

- ▶ **온라인판매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온라인판매업자: (예) 3.0% → 1.8~2.3%
 - 개인택시사업자: (예) 1.5% → 1.0%

금융위원회
02-2100-2500

- ▶ **담배 등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수수료 개편 추진**

-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3~7%→최대 9%)**

환경부
1577-8866

- ▶ **제로페이 → 0%대 수수료 확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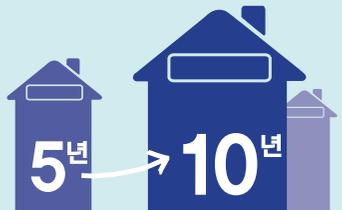
임대차 안정성을 높ی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추진 관련 법령 개정시 시행

- ▶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금액을 추가 상향 추진
 - *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상향을 통하여 전체 계약의 최대 95% 이상을 보호
- ▶ **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
 -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 인정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여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의 위험 감소
- ▶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 * 전통시장 중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776개 시장 대상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자금지원 확대 '19년 시행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하여 금융부담 완화
 - * 보증요율 1% 내외, 보증한도 최대 8억원, 85% 부분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기간 연장 ('19년까지)
 -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대상, 보증요율 0.8%, 보증한도 최대 1억원, 100% 전액 보증
- ▶ **기업은행 특별대출 신설**
 - 가산금리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출상품 신설(1.8조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으로 특례보증서(신용보증기금 등) 발급기업 대상
 - * 금리 2% 내외, 보증요율 1% 내외
 - 카드매출대금의 일부가 자동 상환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신설(0.2조원)
 - * 카드매출 대금을 신용카드사(BC)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 * 금리 2%대, 보증요율 1% 내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지역센터

기업은행
1566-2566



매출도 늘려드리겠습니다.

매출 확대 및 시설 개선 '19년 시행

-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1.5~2조원)
 - * 5% 상시할인(구매한도 30만원)
-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식사시간 등에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및 옥외 영업 활성화**
- ▶ **우수 소상공인 제품 홀소핑 입점 지원**(기업당 1,500만원)
-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45개소) 및 태양광패널 설치 등 시설 개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재도전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폐업 및 구직활동 지원 '19년 시행

- ▶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금 확대**
 - 폐업예정 소상공인(근로자 전환 예정)을 대상으로 사업장 철거·복구 지원 확대(최대 100~200만원)
- ▶ **전직장려수당 인상**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 * 지원요건: ①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② 사업장 폐업신고 ③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취업한 경우
- ▶ **구직촉진수당 지급**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가맹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법령 개정시 시행

- ▶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 출점제한에 대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의 자율규약안 심사 요청시 공정위에서 적극 검토
- ▶ **가맹점주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 ▶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협의 개시 의무화**
 -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신고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 의무 부과
- ▶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행위 발견 시 법 집행 강화(시행명령,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소상공인 권익을 개선했습니다.

-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19년 시행)
- ▶ **최저임금 위반시 1차 시정 및 지도·교육 후 조치** ('18.8 시행)
- ▶ **청소년에 주류 등 판매시 선량한 판매자는 행정처분 면제**('19년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